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449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보험자병원 설립 및 사업범위 등의 근거 마련	3

I. 개요

1.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4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2.
- (3) 회 부 일 : 2024. 1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서는 현행법에 어긋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자병원 설립 및 사업범위 등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자병원의 책무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며,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보험자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u>제3장의2 보험자병원</u> <u>제40조의2(보험자병원의 설립)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운영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험자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u> <u>제40조의3(보험자병원의 책무) 보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u> <u>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u> <u>2.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u>

<신 설>

<신 설>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의료서비스

제40조의4(보험자병원의 사업) 보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의료사업

가. 방문진료,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나. 재활시설방문, 의료봉사, 긴급구호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다. 자원봉사 운영사업

라. 임상상담 등 사회복지 상담사업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 등 보건의료인력의 훈련

3. 의학회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장례식장 운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병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40조의5(경영평가) ① 공단은 매년 보험자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

<신 설>

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자병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
가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 의결
을 거쳐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조직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4.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
감 노력
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보험자병원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
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보험자병원에 대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
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그 밖
에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비용 지원)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관할 지역

	<u>에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공단 정관」(이하 “정관”)에서는 “보험자병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¹⁾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²⁾

- 정관에서는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의 사업으로 ① 진료사업,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④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⑤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음식점 등 편의시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

1) [참고자료 1] 일산병원 개요 및 현황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7. 의료시설의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62조(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63조(의료시설의 명칭) 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명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의 임대, ⑥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법률에 보험자병원의 설립근거, 책무 및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자병원의 양적·질적 확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64조(사업) ① 공단은 병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료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5.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타인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병원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6.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병원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또는 다른 의료기관과 환자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등에 관한 지원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산병원의 경우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정책집행의 테스트베드 역할 등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부문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정관⁴⁾ 및 하위규정⁵⁾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중 건강보험사업회계의 일반회계에서 일산병원 운영 관련 특별회계에 매년 100억원 이상을 지원⁶⁾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험자병원이 추가적으로 설립·운영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을 통한 지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68조(병원운영 재원) 제64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공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5) 「회계·예산 등에 관한 규정」(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 제7조(회계별 처리대상) ② 「정관」 제53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단의 거래를 처리한다.

1. 건강보험사업회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래
 - 가. 일반회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 각 호(제7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거래
 - 나. 특별회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

제46조(특별회계 지원금의 용도) ① 「정관」 제68조제2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한다.

1. 해당 의료시설 역할 강화를 위한 의료 환경 인프라 구축 비용
2.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비용
3.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적게 수행함에 따른 기회손실 비용
 - 가. 건강보험 정책 기초자료의 생산·제공
 - 나. 정부 시범사업 운영
 - 다. 그 밖에 의료기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4. 그 밖에 해당 의료시설 운영비

6) 공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일산병원 회계상 수입항목 중 의료외 수입에 포함됨.

※ 연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백만원): ('20) 10,723 ('21) 11,213 ('22) 11,715 ('23) 12,419

< 일산병원 최근 5년간 수입, 지출, 손익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1월)*
수입	계	285,710	344,617	336,291	327,443	320,505
	▫ 의료수입	254,543	320,210	309,305	295,372	262,225
	▫ 의료외수입	31,167	24,407	26,986	32,071	58,280
지출	계	309,939	329,823	346,750	363,813	330,769
	▫ 의료지출	296,895	316,511	331,751	345,583	328,931
	▫ 의료외지출	13,044	13,312	14,999	18,230	1,838
손익		△24,229	14,794	△10,459	△36,370	△10,2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둘째, 보험자병원의 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공공의료 사업 및 연구 외에도 정책집행의 테스트베드로서 건강보험의 적정수가 기준 제시 및 진료 표준모델, 원가분석 등 정책 참고자료를 산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셋째, 보험자병원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에 따라 경영

7)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산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실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산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 내부적으로 정관⁸⁾에 근거하여 일산병원의 경영관리(경영전략, 재무관리, 조직관리,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진료사업, 보험자병원 사업,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⁹⁾ 개정안은 보험자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인사상·예산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보험자병원 소재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일산병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건강보험재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특히, 개정안 제40조의 4에서 보험자병원의 사업으로 방문진료,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연계 사업, 재활시설방문, 의료봉사, 긴급구호활동 등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자체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67조(병원의 사업계획) ①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 설립목적 달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를 공단의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변경 2020.09.29.>

③ 병원장은 사업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9) [참고자료 2] 2025년도 일산병원 평가 체계 참조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책무 및 사업범위) 보험자병원의 책무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가조사, 신규병원모델 개발 지원 등 가입자 전체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책무 및 사업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타 지역 가입자 대비 병원 소재 지역민의 보험자병원 이용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책무 및 사업범위) 공단이 보험자병원을 운영하는 취지는 건강보험의 적정수가 기준 제시 및 정책 참고자료 산출이 주요 목적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 기존 공공의료기관과 역할이 중복되어 차별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 큼.
- (경영평가) 공단은 정관에 따라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체 성과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음. 다만, 공공병원 중 법률에 평가가 명시된 곳은 지방의료원 등 일부에 국한되는 바, 공단 정관의 규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

이 가능해 보임.

-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지원 조항을 의무가 아닌 ‘예산의 범위 내 지원’만으로 규정할 경우, 수익성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자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적자보전 범위 지정 등으로 예산지원 의무화를 명시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

1 | 설립 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7조 및 제62조

-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으로서 ①건강보험 모델병원 ②공공병원 ③일반병원 역할 수행

□ 주요 연혁

- ('92. 8월) 병원 건립 승인 ... 보건복지부
- ('00.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개원 ... 774병상 규모
- ('06. 7월) 의학연구소 개소
- ('17. 3월) 동관 증축 ... 830병상 규모(+56병상), 암센터 등
- ('20. 9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선정
- ('20.12월~'22.6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및 운영
- ('21. 7월) 경기도 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선정
- ('22. 6월)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 ('23. 4월)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 ('23. 5월) 경기도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23. 7월)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지원기관 선정
- ('23.12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
- ('24. 4월) '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사업 수행기관 선정 ... 과기부

2

일산병원 개요

□ 중별 및 병상

○ (의료기관 중별) 종합병원

○ (규모) 지상 13층, 지하 5층 ... 대지 7,877평*, 건물 34,118평

* '건강통합관리센터' 부지 1,000평 포함

■ 인근 직장 어린이집(대지 145평, 건물 526평 /지상 5층, 지하 1층) 별도 운영

■ 인근 카프병원 일부를 임차하여 국가검진센터 및 병원연구소, 사무공간 등 활용

○ (병상) 총 794개(12.16. 기준), 개원 시부터 4인 병실을 기준으로 운영

- 공익적 병상 101개 운영 ... 재활병상(53), 완화의료(20), 정신과(28)

(단위: 개, %)

계	4인실 (기준병상)	1인실	2인실	3인실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Stroke unit	집중 치료실
794 (100%)	612 (77.1)	47 (5.9)	24 (3.0)	27 (3.4)	5 (0.6)	6 (0.8)	73 (9.2)

□ 진료과목

○ 총 24개 진료과 운영

내과	신경과	정신 건강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흉부 외과	성형 외과	마취 통증	산부인 과	소아청소년 과	안과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의 학과	영상 의학	방사선 종양	병리과	진단검사 의학	재활 의학	가정 의학	핵의학	치과	응급 의학

※ 법정과목 27개 중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미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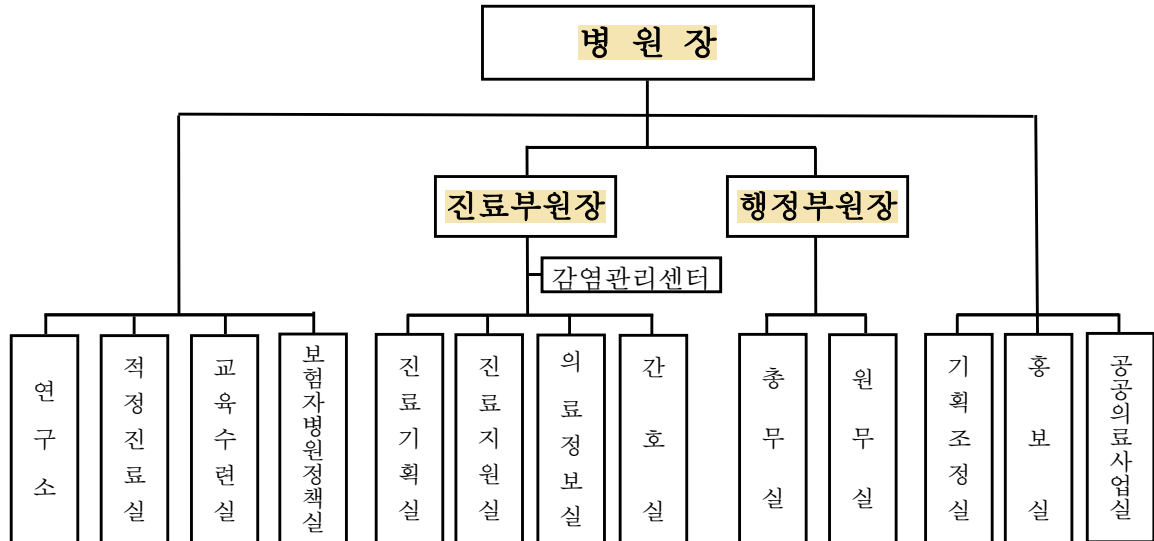
○ (중증·고위험질환 전문진료센터) 암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 (사회적 관심질환 진료센터 등) 치매예방센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소아 발달지연클리닉 등

3

조직 및 인력

□ (조직) 12실, 1 연구소, 1 사업단, 49부 구성



□ (인력) 정원 2,587.5명

'24. 12. 1. 현재(단위: 명)

계	병원장	의사직	관리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의학 물리·화학·의사	업무 지원직
2,587.5	1	208	1	1,106	29	240.5	151	11	1	1	838

□ (예산) 2024년은 전년 대비 2.2%(91억 원) 증가한 4,280억 원

(단위: 억 원)

수 입			지 출		
계	자체수입	공단지원금	계	병원사업	연구사업
4,280 (100.0%)	3,541 (82.7%)	739 (17.3%)	4,280 (100.0%)	4,165 (97.3%)	115 (2.7%)

□ 재정 현황

-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적자였으나 '24.1월에는 균형수지 회복
- '24.2월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24.11월 누적적자 103억원 발생

(단위: 억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11.
수 익	2,350	2,528	2,690	2,940	2,857	3,466	3,363	3,274	3,205
비 용	2,243	2,474	2,678	2,913	3,099	3,298	3,468	3,638	3,308
손 익	107	54	20	27	△242	148	△105	△364	△103

참고자료 2 2025년도 일산병원 평가 체계

□ 전체 평가부문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유형
		< 22개 지표 >	100	
I. 경영관리 (40점)	경영전략 (15점)	1. 전략기획,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	9	비계량
		2. 고객만족도	4	계량
		3. 경영공시 관리	2	계량
	재무관리 (5점)	4. 재무건전성 달성도	5	계량
	조직(보수) 관리 (8점)	5. 합리적 인적자원 운용 및 성과관리	6	비계량
		6.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	2	계량
	사회적 책임 (12점)	7. 균등한 기회보장, 근로환경 안전성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	5	비계량
		8. 일자리 창출(장애인, 국가유공자)	3	계량
		9. 안전강화 실적 및 안전사고 감소노력	4	계량
II. 주요사업 (60점)	진료사업 (26점)	10. 적정 진료 제공 및 의료 질 향상	11	비계량
		11. 환자진료실적(입원·외래)	5	계량
		12. 100병상 당 월평균 진료수익	5	계량
		13. 의료 질 평가 향상 실적	5	계량
	보험자병원 사업 (21점)	14. 보험자 모델병원 역할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8	비계량
		15.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4	계량
		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4	계량
		17.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결과	3	계량
		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성과	2	계량
	정책지원 (연구)사업 (13점)	19.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지원 -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노력과 성과	4	비계량
		20. 정책참고자료 제공 실적	4	계량
		21. 원가분석 활용 실적	4	계량
		22. 임상의학 연구(논문게재) 실적	1	계량

□ 경영관리 부문 세부내용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유형
경영전략 [15점]	1. 전략기획,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 - 병원의 설립목적 및 가치체계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 - 병원 운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책임성 제고 - 환경변화 분석, 경영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9	비계량
	2. 고객만족도	4	계량
	3. 경영공시 관리	2	계량
재무관리 [5점]	4. 재무건전성 달성도	5	계량
조직(보수)관리 [8점]	5. 합리적 인적자원 운용 및 성과관리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 - 안정적 조직관리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 노력 - 합리적인 보수 및 성과관리	6	비계량
	6.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	2	계량
사회적 책임 [12점]	7. 균등한 기회보장, 근로환경 안전성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산업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친환경·탄소중립,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	5	비계량
	8. 일자리 창출(장애인, 국가유공자)	3	계량
	9. 안전강화 실적 및 안전사고 감소노력	4	계량

□ 주요사업 부문 세부내용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유형
진료사업 [26점]	1. 적정 진료 제공 및 의료 질 향상 - 양질의 적정 진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긍정적 환자경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11	비계량
	2. 환자진료실적(입원·외래)	5	계량
	3. 100병상 당 월평균 진료수익	5	계량
	4. 의료 질 평가 향상 실적	5	계량
보험자병원 사업 [21점]	5. 보험자 모델병원 역할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 환자중심의 표준운영모델 역할 수행 -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과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과 성과	8	비계량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4	계량
	7.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4	계량
	8.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결과	3	계량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성과	2	계량
정책지원 (연구)사업 [13점]	10.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지원 -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노력과 성과	4	비계량
	11. 정책참고자료 제공 실적	4	계량
	12. 원가분석 활용 실적	4	계량
	13. 임상의학 연구(논문게재) 실적	1	계량